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122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관우, 조아라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화연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3. 체결된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1. 12. 8. 접수

제80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226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9. 9. 26. ‘B는 원고에게 376,3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2008. 3. 14.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2008년생인 C를 미성년자녀로 두었는데, 피고가 B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너91호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여 2021.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조정 내용 중 재산분할 부분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1. 피고와 B는 이혼한다.
2.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B는 피고에게 C의 장래양육비로 2021. 12.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졸업시까지 월 300,000원씩,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성년에 이르기전날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4. B는 다음과 같이 C를 면접교섭하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이하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은 생략).
5. 재산분할로,
가. B는 피고에게 아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늦어도 2021. 12. 31.까지 이행한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현재 채무자:B)를 B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일 피고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위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B를 대위하여 변제한다).

6. 피고와 B는 위에서 정한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부제소합의).

7. 피고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12. 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1.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2. 2.경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인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2022.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담보채무 인수신청을 불승인하여 결국 피고의 피담보채무 인수신청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376,377,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사안에의 적용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미성년자녀 C의 나이를 비롯한 제반 상황 및 B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래양육비 금액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미성년자녀의 부양적 요소(양육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B의 혼인생활 과정, 혼인기간, 혼인생활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도, 재산상황,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장래 생계유지수단의 유무, B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두 달 정도 지나서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B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은 과대하거나 혹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담보채무 인수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가처분결정 때문에 피담보채무 인수신청이 불승인되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하거나 혹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별지